

전기통신에 있어서의 표준화와 지적 재산권과의 마찰

본 기사는 일본 ITU 협회가 발행하는 「ITU 연구」 90년 8월호를 당 협회가 번역한 것으로 전기통신에 있어 발생하는 표준화와 지적 재산권간의 미묘한 이해·갈등을 사례별로 다루었다.
 표준화, 지적 재산권의 상관관계를 재고하며 표준화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두번에 나누어 연재한다.

- I. 서 론
- II. CCITT에 있어서의 상황
 - 1. 일반적 상황
 - 2. 표준화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사례
 - 가. SG 14의 G-3 팩시밀리
 - 나. SG 18의 32 Kbps ADPCM
 - 다. SG 18의 64 Kbps ADPCM
- III. ISO에 있어서의 상황
- IV. ANSI 및 IEEE에 있어서의 상황
- V. TTC에 있어서의 상황
- VI. 결 론

I. 서 론

최근 전기통신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전기통신은 산업, 경제, 사회 활동에 필요한 「Infrastructure」로서의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전기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서는 상호 접속성이 보증되어야 하고, 그를 위한 표준화는 상당히 중요하다. 전기통신 분야에서의 국제 표준화는 국제연합 전문 기관의 하나인 ITU(국제 전기통신 연합)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표준화 작업의 현장에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Network를 경유하는 통신을 할 경우에 상호 접속의 인터페이스 조건을 통일하여 놓지 않으면 본래의 의미에서의 상호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Network의 상호 접속에 관한 표준화가 중요시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경쟁 환경하에서 서비스의 차별화, 다양화에 따라 특히 고도통신을 할 경우, 표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호 접속성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의와 연구의 여지를 남겨두는 형태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통신방식의 표준화는 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이루하고 있으나, 표준화의 대상이 인터페이스 뿐만 아니라 기기, 시스템의 이용방법이나 구축방법 등 세부사항에 이르면 서비스, 기기, 시스템의 장래 발전여지와 이용자선택의 여지를 없애고, 더 나아가서는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다종 다양한 요청이 오늘의 전기통신분야 표준화에 대하여 밀어 닦치고 있다.

다년간 국제 표준화 작업에 종사하여 온 마쓰바라씨에 의하면 “국제 표준은 최적의 사회이익 증진을 목표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안정성과 적절한 품질 및 호환성이 확보되고, 특히 국제 통신에 있어서는 상호 접속성이 보증된다. 또 국제 표준에 따른 전기통신 설비의 제조는 규모가 크다는 이익을 얻을 수가 있으며 쌍

가격으로 공급을 가능케 한다는 결과로 개발 도상국에 있어서 사회경제의 기반이 되는 전기통신망을 경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국제표준은 공공재산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 하등의 제약을 가 할 수 없는 것”이 되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편, 근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 표준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최초에 고안한 사람의 권리를 지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국제표준의 사고방식과 대립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즉 국제표준의 준수를 예워싼 문제와 별도로 국제 표준화 작업의 과정에서 지적 재산권과 마찰이 지극히 심각한 문제로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이 GATT-Standard Cord하에서 국제표준과 연동하여야 하는 국내표준의 작업과정에도 같은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 전기통신의 국제 표준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ITU 산하 CCITT(국제 전신전화 자문위원회)에서의 사례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ISO(국제 표준화기구), ANSI(미국 규격협회), IEEE(미국 전기전자학회), 및 TTC(일본 전신전화 기술위원회)에서의 지적 재산권의 취급현황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금후의 방향을 짚어 본다.

II. CCITT에 있어서의 상황

1. 일반적 상황

전기통신분야의 국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CCITT의 지적 재산권, 특히 특허의 문제가 의논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전반부터다. 그것은 초기에 국제 망간의 접속으로부터 시작하여 국내 UNI(User Network Interface)의 방향으로 CCITT의 활동 영역이 넓어져 가는 것과 또한 최근에는 하나의 망 내에서도 장치의 다중벤판화를 가능케 하기 위한 장치 상호간의 인터페이스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까지 진척되어 가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또 하나의 이유로서 디지털화의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1976년 가을에 열렸던 CCITT 총회 의사록에는

「CCITT Patent Policy」라는 제목의 기록이 있는데 그에 의하면 Patent Policy는 처음 위원회에서 논의되었고, 동 위원회의 기록에 의하면 미·소의 흥미 깊은 대립이 거기에 나타나 있다.

즉 소련대표는 ‘특허권자가 CCITT의 멤버인 여러나라에 대하여 기한없이 또한 무상으로 라이센스를 제공한다는 요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CCITT의 표준이 특허권에서 보호되는 것을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미국의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반론하고 있다. ‘표준화 작성에 있어서 특허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이제는 불가능하고, 표준에 포함되는 모든 특허권에 대하여 완전한 지식을 갖는 것도 또한 불가능하다. 종래에는 특허와 관계되는 표준을 채용하지 않는 방침으로 CCITT는 일하여 왔으나, 그것은 기술의 진보에 제동을 걸 뿐이다’는 것이다.

소련이 주장하는 것 같이 라이센스료를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채용이 어렵다. 특허권의 메카니즘은 발명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구축된 것으로써 이러한 전세계적 관행에 역행하는 권한을 CCITT는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특허권의 오용이 인정될 수 없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Committee-A에서 기초된 초안이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조건에서의 라이센스 공여가 강조되었음으로 그로서 충분한 것이라 하겠고, 또한 이 초안에서 ‘특허권자가 이러한 조건의 라이센스 공여에 대하여 동의를 취소할 경우 해당 CCITT 권고 또한 철회될 수 있다’는 것과 ‘권고안 심의의 가급적 초기단계에서 관련된 특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표명이 있었다는 것을 앞에서 미국대표가 발언한 내용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Committee-A의 의장은 이 문제를 동 위원회의 권한을 초월하는 것으로 CCITT 총회(제6회)에 그 판단을 위임하였으나 총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였고, 각국 대표의 발언으로 미루어 대체적인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가장 상세한 것은 소련대표의 발언으로 각국 주관청 및 RPOA(인정된 시기업)가 CCITT 표준의 실시에 있어서 특허권자로부터 라이센스 공여를 받도록 권고한다는 것과 같은 일은 ITU의 권능과 목적에 상반되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특허권자가 「Fair and Reasonable Terms」로 라이센스를 공여한다는 요지를 확약하더라도 그 조건에 대

한 해석의 차가 있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또 전술과 같은 유상의 표준까지 인정하는 원칙이 제시된다면,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를 표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각기 활동을 개시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CCITT의 활동에 지체 등이 생길것이다. 특허권자의 보상(Re-muneration)은 확실히 특허법의 문제이나 CCITT 표준이 개개의 기업에게 상업적 이익을 가져 오게 할 수는 없다. 또한 소련대표는 어디까지나 무상사용에 집념하면서도 초안에 있었다고 생각되는 “공명하고도 합리적인 조건”에서의 라이센스 공여와 더불어 그것이 무차별적(On a non-discriminatory basis)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조건화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었던 것 같다.

결국 제6회 CCITT 총회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제7회 총회에 다시 심의하기로 하였지만, 그후 총회에서는 정식으로 심의된 적이 없이 지금에 이르렀다. 제6회 CCITT 총회 이후, 특히 문제는 실제로 표준안을 작성·심의하는 각 연구위원회(SG)에서 개별적으로 취급하게 되었다.

약간 구체적인 실례의 검토는 후에 하기로 하고 CCITT 전체의 움직임을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SG 8에서의 심의 중 1984년 3월에 CCITT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출된 「CCITT Patent Policy」라고 제안한 문서가 있다. 거기에는 후술 ISO 등의 표준화 기관과 공동보조를 취할 필요가 제기되면서 다음과 같은 규칙이 결정되었다. “It was desided.”라고 되어 있으며, SG의 각 멤버는 심의 중인 표준안과 관계되는 특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러한 특허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에 대하여, 각 멤버에게 해당 특허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표준안 채택의 관계에서 최소 조건은 무차별적이며 합리적인 대가에 의하여 라이센스가 공여되는 것이다. 이런 특허권자에 의한 Statement는 일반적인 회의관계 문서로서 공개되고, SG의 멤버는 특허권자의 라이센스 계약 교섭을 표준안의 정식 채택(CCITT 총회에서 이루어 진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라이센스 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주관청 및 RPOA는 표준화의 철학을 SG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CCITT 사무국측이 제출한 이 문서에는 해당 SG 8 내부에 약간의 문제점이 숨어있다는 의미가 없지 않으며 일견 그러한 느낌을 갖을 수 있는 것 같다.

다음에 주목되는 것으로 1987년 9월 1일~3일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CCITT의 각 SG 의장회의 보고이다. 즉 몇몇 SG 8는 특허권이 부여되거나 특허 신청 중인 기술적 사항을 보완하는 표준안을 준비하고 있으나, 모든 SG 8에서의 통일적 취급을 보장하고 혼란을 피하는 의미에서 「A Statement on CCITT Patent Policy」가 작성되어 있어 모든 SG 가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SG 15의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CCITT의 표준이 말단의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 의해 이용이 가능한 것이 되도록 하고, 한 사람의 특허권자에 의한 배타적(독점적)인 상업적 권리 남용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고 우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CCITT 내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Code of Practice」가 제시되어 온 것으로 되어 있다. 즉 CCITT는 특허 또는 유사한 권리에 대하여 권위가 있거나 포괄적인 정보를 줄 수는 없지만, 입수 가능한 정보는 모두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문에 CCITT의 멤버이면서 특허에 관계된 표준안을 제안하는 자가 “Any known patent and similar rights on a worldwide basis or any known pending applications.”에 대하여 CCITT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는 것이다. 다만 CCITT는 이러한 정보의 유효성을 보증할 입장은 아니다.

상기와 같은 전개하에서

①특허권자가 무조건적이면 무상으로 자기의 특허(예판한 발명) 이용(실시)를 인정할 경우.

②특허권자 또는 그에 유사한 권리의 보유자가 무상은 아니지만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with applicants throughout the world on reasonable terms and conditions.”라는 것으로 라이센스 교섭에 응하는 자세를 표시하면 CCITT 표준이 작성된다.

③1, 2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CCITT 표준은 작성되지 않는다. 앞에서 기술한 세가지 모두의 경우, 특허권자는 전술한 점에 관한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고 (has to), 그 서면에서 전기 1, 2, 3에 제시된 이외의 부가적인 조건 등을 볼여서는 안된다. (Must not)

전술한 CCITT의 Patent Policy는 CCITT 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된 것도 아니며,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표현은 CCITT의 문서로는 지나치게 강한 면도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각 SG의 취급에 있어서 위의 문서와는 약간 의미를 달리 하는 점이 (Statement를 보관하는 문제를 포함)보인다.

현재까지 알 수 있었던 실례를 따르면서 '특허권의 무상 실시가 그 정도로 비현실적인 요청인가'라는 점도 포함하여 후에 검토하기로 한다. 그리고 전술의 문서에도 지적되어 있는 점, 즉 팬딩한 상태에서의 특허신청, 특히 기업 비밀취급으로 되어 있는 출원공개 전의 특허(단, 미국에서는 출원공개의 제도가 없다.)의 취급에 있어서도 약간의 주의해야 할 실례들이 있다.

2 표준화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사례

가) SG X IV의 G-3 패시밀리

이른바 G-3 패시밀리의 국제 표준화는 일본이 관·민의 총력을 기울여 성공으로 이끈 기념비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디지털 방식에 의한 화소정보의 전송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용장도 삭감이라는 부호화 방식의 표준화가 문제였다.

이에는 일차원방식과 이차원방식이 있으며 전자가 기본방식, 후자가 선택방식으로 1980년에 T 4 권고가 채택되었다.

고전적 방식인 전자에서는 특허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나 일본의 안이 채택된 후자에서는 그것이 복잡한 형태로 발생하였다. SG X IV내부에서는 특허문제에 관해 여러 가지 의견이 교환되었으나, 유상을 고수하는 측에서 개인이나 비 ITU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하여 무상실시 확약을 받아 내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엄밀한 의미로서의 무차별 라이센스 공여가 곤란하다는 것 등의 중요한 문제점이 지적된 것 같다. 또한 특허에 관한 무상실시를 확약하는 Statement를 제출한다 할지라도 해당 표준을 실시할 경우, 통신관계 목적의 사용에만 한정하는 것인지 또는 기타의 용도에 사용할 경우도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도 논의된 것 같다.

결국 문제가 된 이차원방식에 관해서 NTT(일본전신 전화주식회사)와 KDD의 특허 출원 「파리 조약상의 제1국(일본) 출원은 1979년 7월~1980년 1월」에 관련된 Read 방식이라는 부호화 방식을 표준화 과정에서 타국으로부터 제출된 기술적 요망사항을 받아들여 수정한 것으로

로 하여 「Modified Read(MR)」방식이 채택되었다. 그 때 SG X IV의 경도회합(1980년 11월 7일~15일)에서 '전기한 두 사업자(이하 전기통신 사업자, 메이커를 불문하고 사업자라 칭함)는 MR 방식에 관계되는 Read 방식의 특허권 무상실시에 동의하라'는 요지를 선언하였다고 (최종적인 사용목적을 제한하지 않고)되어 있다. 그러나 T 4 권고와 관련된 특허라는 점에서 일본의 전술된 두 사업자에 의한 미·일을 비롯한 8개국의 출원이 있는 외에도, 내외의 타 복수 사업자가 갖고 있는 특허권이 따로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에 앞서 부언할 것은 NTT와 KDD가 파리 조약 상의 제1국 출원(출원국 일본)에 있어 출원공개 전에 전기된 Statement를 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MR 방식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1979년 12월의 제네바 회합에서 IBM사가 이른바 「Delayed Contribution」으로서 Read 와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방식을 제안하여 온 일이 있다. 데라무라씨(당시 SG X IV 부회장)에 의하면 "이 것은 발명된지 얼마 안되는 기술인 것 같았고, 또한 미국에서 특허출원 (상세한 것은 아직 조사되어 있지 않음)한지 얼마 안된 것으로 짐작된다."라고 했다. 출원공개 제도가 없는 미국의 일이므로 어차피 이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고도의 기업비밀이 되겠으나, 그것이 다름아닌 IBM 사에 의한 표준화 작업장에서 공개되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1980년 11월 전기의 경도회합 후, 다음 해 4월 MR 방식에 관련되는 특허권(그것이 구체적으로는 무엇인지 아직 판명되지 않았다)을 가지고 있는 IBM 사와 NTT 및 KDD의 세 회사가 회합을 갖고, IBM 사도 해당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합의가 있었던 것 같다. 상세한 것은 더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미국 사업자 중에서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가장 강조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은 IBM 사 마저도 표준화의 관계에서 항시 유상실시에 짐작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만 IBM 사는 SG X IV가 섭의하는 마당에서 특허권에 관한 Statement를, 이 경우에는 아무 것도 제출하지 않은 것 같으며, 이 점에 있어서는 관련 특허권을 갖고 있는 내·외의 타 사업자와 같다. SG X IV에 있어 관련 특허의 조사가 어디까지 철저하게 이루어 졌는지 분명치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

로 다른 각도에서 조사가 필요하고 어느 것이나 상징적인 뜻을 갖고 있는 NTT나 KDD의 무상실시 협약에 의하여 해당 표준이 채택된 셈이다.

나. SG X VIII의 32 Kbps ADPCM

이 기술의 표준화 작업은 6~7년전부터 추진되고 있었으나(후에 G. 721 권고로 되었다) 작업의 꽤 이른단계에서부터 특허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 기술에 대해서 '내·외의 복수 사업자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SG X VIII에의 심의에 참가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자신의 특허권이 관련될 것 같은 자들 사이에서, SG의 비회원이 어떠한 특허권을 갖고 있는지(또는 출원 중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의 특허를 공개한다 하여도 의미가 없다' 또는 '출원공개 전의 특허에 대하여서는 조사할 필요가 없다'하는 소극논과 나가서 '표준으로 하니까 무상으로 실시 할 수 있다는 구실이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계약서라는 인식하에서 내·외의 각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Statement를 서면제출하기로 하였다. 해당 표준안에 포함된 모든 특허에 대하여 Statement를 냈는지, 각 사업자가 출원할 국가는 어느 나라인가, 지금 당장에는 판별되지 않는다.

다만 다행인 것은 내·외의 사업자가 CCITT 사무국장 앞으로 제출한 Statement를 약간 입수 할 수 있었다. 이것들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사안 외 성질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 대묘는 후에 기술한다.

사업자 X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에 대하여 해당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 이용에 한해 모든 이용자에게 비 배타적이며 무상으로 라이센스를 공여한다.

다만 해당 이용자가 해당 표준에 관련되는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그 자가 X에게 전술한 것과 같은 범위에서 무상 라이센스를 공여하는 것이 조건이 된다. 해당 이용자가 관련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그 것은 해당자가 X로부터 비 배타적으로 무상의 라이센스를 받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여기서 특허권이라고 하는 것(해당 표준에 적합하기 위하여서는)은 필수적인 특허로서 해당 CCITT 표준과 관계하여, 채택 이전에 이루어진 발명에 관한 것으로 X 또는 그 자회사에 의하여 보유되거나 지배되는 것을 말한다.

그 이용이 해당 표준에 적합함에서 필수적이 아닌(Not Essential) 특허 또는 최선의 노력에 의하여 그 이

용을 회피할 수 있는 특허(Any Patent ... Which can be avoided by those killed in the art through the exercise of their best efforts)는 전기의 무상 라이센스 공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X는 이를 「Non-essential patents」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건에서의 라이센스 협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한다.

더구나 해당 표준안 작성을 위하여 동 SG 내에 설립된 「Ad-hoc Group」보고서에는 그룹내 사업자의 Statement가 모두 제출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아무튼 출원 중인 특허에 대해서는(다시 말하자면 Statement를 낸 단계에서 출원공개 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무상 라이센스 공여의 Statement가 내·외의 사업자로부터 제출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우선 유의해야겠다. (더욱이 무상조건은 1983년 4월 21일 AT & T 제안에 의하여 실현되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해당 표준을 실시하고, 또 적합함에 있어 기술적으로 회피가 불가능한, 그런 뜻으로 필수특허(Ad-hoc Group의 보고서에 의하면 "Patents covering inventions to the algorithm, the use of which can not be avoided whatever the implementation")라는 제약이 붙어 있다.

이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하는 판단은 극히 미묘하며 회피 가능성은 표준 작성 후의 기술발전에도 관계될 것이다. 어떻든지 무상이라 하지만 개별적으로 라이센스 공여 교섭이 전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메이커 제품의 제조·판매를 한 경우, 해당 메이커가 즉시 전기의 Statement를 원용하여 특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 SG X VIII의 64 Kbps ADPCM

64 Kbps ADPCM에 관하여는 잠정권고가 1986년에 제출되어 1988년 CCITT 총회에서 정식 채택되었다.

이 표준화에 있어서 음성의 대역을 양분하는 필터로서 QMg라는 기술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IBM 사의 특허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것 같다. 표준화안 작성을 위한 전문가 회합에서 같은 SG X VIII 내에서의 작업이라는 점으로 32 Kbps ADPCM의 경우와 같이 특허문제 취급은 선례에 따르기로 동 회합의 의장이 제안하여 인정되었다. 그러나 IBM 사는 그 회합의 일원으로 참가하고 있지 않았고, 동회합에서 의장이 IBM 사를 포함하여 전문가 회합의 내부 및 외부에 있는 자로서 해당 표준안에 관련되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자(Possible

patent holders) 와 직접 접촉할 것에 합의하였다.

우선 답습하기로 된 32 Kbps 의 경우의 표준화 작업판례문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즉 전문가 회합의 전 member 에 대하여 각 member 가 표준안과 관계있는 특허의 소유여부를 불구하고 (Owning or not patents related to ...) 이미 본고에서 그 대요를 기술한 내용과 같은 Statement 의 제출이 요구되어 모두 제출한 것 같다. 또 다른 한편으로 동 회합의 member 는 아니나, 알 수 있었던 특허권자 (Known holders of patents) 도 모두 같은 Statement 를 제출하고, 이것들 모두가 1983년말까지 CCITT 위원장 앞으로 송부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Statement 의 내용은 "Patent holders will grant non-exclusive, royalty-free licenses to anyone asking for it, under some conditions of reciprocity, if applicable." 라고 생략된 형태로서 표현되어 있다.

어떻든지 무상에 의한 사용(실시)이 합의 되었다는 것은 기술한 바와 같고, 64 Kbps의 경우 전문가 회합의장은 이렇게 무상실시의 Statement 제출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또한 의장은 동 회합의 member 인 일본사업자에 대하여 특히 비 member 인 별도의 일본사업자와 접촉하고자 요청하기도 하였다.

1983년 11월 5일~8일 동경에서 개최된 전문가 회합의 기록에 의하면, 상당수의 외국 사업자로부터 무상실시에 응한다는 요지의 Statement 가 제출됐으나 아직 모두 제출 된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각 member 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청된다. 또한 동 회합이 1986년 3월 24 일~27일에 회합한 기록(안)에는 64 Kbps 의 경우, 회합의 비 member 에 특허권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32 Kbps 의 경우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미 제출된 Statement 중에는 무상이 아닌 실시를 조건으로 한다는 뜻이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다. 여기에 언급된 SG X III 에서의 유상실시 조건의 특허가 부여된대로 작성된 표준에 대하여는 계속 조사 중에 있으나 이것은 G-3팩시밀리 용 모뎀(V.29 bis)에도 널리 채용되고 있는 미국 코덱스사의 (현재 모토로라사에 매수되어 있음) 특허권과 관계가 있다.

IBM 사 (Statement 를 제출한 것은 IBM Europe) 는 1984년 6월 4일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Statement 를 제출하였다.

"IBM has patents in the domain of voice encoding

techniques that are under discussion in CCITT Study Group X VIII and is willing to grantlicenses on a non-discriminatory, non-exclusive basis, on reasonable terms and conditions in respect of those patents."

결국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가 있어, 일부 유상실시의 특허권을 포함하는 형태로 64 Kbps ADPCM 의 표준화가 제출된 Statement 중에서 IBM 사(것만이 유상)이 부여되었지만, 전기 회합의 비 member 인 일본의 사업자도 해당 표준과 관계있는 특허권을 갖고 있는 것 같았으며 (표준 체택 시점에서 이미 성립되어 있었는지는 미조사)에 대하여 재삼 의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Statement 도 나오지 않았다.

확실하게 표준안이 완전히 성립되기 까지는 기술적으로 특정한 특허권과 저촉유무를 엄밀하게 판단할 수 없는데, 나아가 법적으로 특허 클레임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이르면 각국의 출원서류를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설령 유상으로 하려 하더라도 전술의 IBM 사 정도의 Statement 는 낼 수 있을 것이라 하겠고(다만 전술한 일본사업자는 특별히 해당 표준 실시에 대해 라이센스료 지불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하여 64 Kbps ADPCM 의 표준화는 문제의 복잡성을 부각시킨 선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속)

토·막·소·식

최신 음성인식 및 합성기술 워크샵 The Workshop on Advanced Technology of Speech Recognition and Synthesis

주제 : 자동통역전화 시스템의 기술개발전략

일시 : 1991. 7. 24~25

장소 : 예술의 전당

주최 : 한국음향학회,

IEEE KOREA SECTION

후원 : 체신부, 한국통신